

특/ 별/ 기/ 고

「經世遺表」에 나타난 丁茶山의 實學思想

彭 林(北京師範大學 教授)

〈目 次〉

1. 머리말
2. 祖宗의 옛법이라도 마땅히 시대와 함께 변해야 한다
3. 명확한 법을 제정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막을 것
4. 富國強兵의 源泉을 열고 그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
5. 맺음말

1. 머리말

「經世遺表」는 일명 「邦禮草本」¹⁾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의 대학자 丁茶山이 만년에 지은 經世澤民에 관한 저작의 하나다. 茶山의 이 저서는 중국의 유가경전인 「周禮」를 藍本으로 삼아, 李朝의 官製 법전인 「經國大典」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아 나라를 다스릴 方略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는데, 다산의 실학사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내용은 官政・財經・教化・刑法・軍制・禮俗 등 각 방면에 걸쳐 있는데, 수십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필자 같은 淺學으로서서는 완전히 궁구할 수 있는 바가 아니기에, 본 논문에서는 다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논점만 선택하여 그 내용을 밝혀 그 일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여러 대가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1) 「與猶堂全書」(1987년 경인문화사 영인본) 제 5책에 보인다.

2. 祖宗의 옛 법이라도 마땅히 시대와 함께 변해야 한다

「經國大典」은 이조 太祖 때 초안이 만들어졌다. 태조 즉위초에 곧 高麗時代의 옛 법을 참작하여 벼슬자리를 만들고 직무를 나누었는데, 二府²⁾에서 軍國大事를 함께 처리하였다. 태조 4년에 鄭道傳이 왕명을 받들어 「經國大典」을 편찬하여 만년토록 전해질 중요한 法典이 되기를 바랐다. 정도전은 「周禮」의 체제를 본떠, 天官·地官·春官·夏官·秋官·冬官 등 六官을 설치하여, 治典·敎典·禮典·刑典·事典 등 六典을 관장하여 관직제도의 大綱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대전」은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 문제가 있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게 되었다.

그 뒤 河崙이 定宗의 命을 받들어 관직제도를 개정하였다. 都評議司를 議政府로, 中樞院을 三軍府로 고친 것 등이었는데, 혼란은 이 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경국대전」도 이름을 고쳐 「經國元典續典」이라고 했다.

世宗 때 또 「六典謄錄」을 지어 관직제도를 명확하게 제정하려고 시도해 봤으나 완성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여러 朝代에서 「경국대전」에 대해서 임의로 고치거나 첨가하여, 各條項이 아주 불어나게 되고 때로 모순점도 드러났다.

이런 점에 유의하여, 世祖가 崔恒 등에게 명하여 하나 하나 바로잡도록 하였다. 다만 「경국대전」이란 이름은 그대로 써서 太祖를 존중한다는 의미를 보였으나, 애석하게도 겨우 戶典·刑典만 완성하고 그 밖의 부분은 완성하지 못하였다.

睿宗 원년 9월에 바야흐로 수정·완성하였으나, 예종이 11월에 죽었기 때문에 반포하지는 못했다.

成宗初에 崔恒 등이 명을 받들어 이미 완성된 「경국대전」을 다시 보충하여 완비되도록 하였다. 2년 뒤에 「경국대전」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을 修訂·補續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성종 때 李克增·魚世謙 등이 「大典續錄」 1권을 지었고, 中宗 때 「大典後續錄」 1권이 있었고, 肅宗 때는 「受敎輯錄」 2권과 「典錄通考」 7권이 있었고, 英祖 때는 「續大典」 6권이 있었고, 正祖 때는 「大典通編」 6권을 지은 것 등이다. 여기서 여러 대를 두고 힘을 기울여 완성한 방대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都評議使司와 義興三軍府.

「경국대전」은 祖宗의 법전으로 숭상되었기 때문에 조정의 대신들은 옛 것을 그대로 지켜 다시 고치려고 하지 않았고, 임금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孝宗 때 貢法을 고쳐 大同法으로 하려고 한 경우나 영조 때 奴婢法을 고치려고 할 적에 모두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大臣들은 걸핏하면, “祖宗의 법을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堯舜은 모두 無爲로써 다스린 임금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일체의 改革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만약 옛것을 駁斥하지 않는다면 新法은 논의를 시작할 수도 없는 것이다.

茶山은 「經世遺表」 책머리에서 祖宗의 법이라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서술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세상의 道理란 江이 변하는 것 같은 것인데, 한 번 정하고서 만세토록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치상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³⁾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비록 사려깊은 생각을 하고 성스러운 殷·周시대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앞 왕조를 대신하여 정치를 할 적에는 옛법에 대해서 增減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산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漢나라가 처음 일어나서 모두 秦나라의 법을 따랐다. 그리하여 일찍이 탈끝만한 것이라도 변경한 것이 없었다’ 秦나라 사람들의 挾書律마저도 그대로 따라 썼다. 이는 漢나라 사람들은 ‘거칠고 우둔하여’ 재주와 식견이 낮다는 표시다. 曹參·陳平 등의 인물은 ‘淸靜’으로 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無爲’를 표방하였는데, ‘이로써 그 空疏한 단점을 엄폐하여 깊은 관청에서 俸祿만 받아 먹었을 뿐’이지, 그들은 ‘법은 四時처럼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다산은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祖宗의 법을 변경하려고 하는 까닭은 바로 그것을 조종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조종이 법을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는 각종 요인의 견제를 받았는데, 그러한 요인은 그 시대에만 특별히 있었던 것이다.

조정의 신하들은 요순의 정치를 묘사하기를, ‘팔짱을 끼고 말없이 단정히 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어도 천하가 저절로 教化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들의 아무 하는 일 없는 것의 免責方法으로 삼으려 한 것에 불과하다. 그들은 현상에 안주하면서 진취를 생각하지 않았다. “‘持大體(대체를 유지한다)’라는 세 글자를 얻자, 그것으로써 천하 만사를 다 해결하려 했다.” 어떤 사람이 어떤

3) 「經世遺表」, 권 1, 1장.

일을 하려고 하면, “곧 堯舜을 인용하여 그것을 꺾어버린다.” 임금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그로 하여금 “堯舜을 생각하여 스스로 기가 꺾이게 해버린다.” 다산은 분개하여 말하기를, “이런 점이 천하가 날로 썩어 가 새롭게 되지 못하는 까닭이다”⁴⁾라고 했다.

다산은 이렇게 생각하였다. 정반대로 堯舜의 정치의 특징은, ‘분발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종합적이고 치밀하고 엄격한 것’으로,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한 순간의 안일함도 꺾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감히 털끝만한 거짓도 꾸미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禹·稷·契·伯益·皋陶 같은 여러 신하들은 ‘분발하고 날래어 임금의 팔다리가 된’ 사람들이다. 이런 까닭에 다산은, “천하에 요순보다 더 부지런한 사람이 없고 요순보다 더 치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요순의 정치는 멀리 전설시대에 있었는데, 그 사실은 「尙書」 등 先秦時代의古籍에 있으나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다. 儒家에서는 요순을 至治의 표준으로 삼긴 하지만, 요순의 形象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이 점은 聖明의 다스림에 대한 해석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다산은 ‘분발하고 진취적’이라는 말로 요순을 묘사했고, 「經世遺表」는 이 점을 목표로 한다고 표명했으며, 다산 자신도 이것으로써 자신을 면려하였다.

효종과 영조가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물리치고서 「경국대전」에 대해서 약간의 개혁을 한 것을, 다산은 칭찬하였다. 그 당시 모여 논의하는 신하들이 대궐 뜰에 가득차서 기세등등하게 힘써 간하였고 심지어 임금의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대궐 난간을 끌어안아 끌어내어도 놓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만, 두 임금은, 쓰잘 데 없는 논의에 방해 받지 않고서, “나라가 비록 망한다 해도 이 법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법을 고친 결과, 백성들은 수백년 동안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다산은 感慨하여, “아아! 이는 大聖人의 말씀이다. 時俗 임금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여⁵⁾, 그의 당시 임금에 대한 기대를 은근히 포함하였다.

變法을 위해서 크게 호소함과 동시에, 다산은 대담하게 자기의 治國方案을 「邦禮草本」이라고 일컬어, 후대 사람들이 修正·潤文해 줄 것을 기다린다는 뜻을 나타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4) 「經世遺表」, 권 1, 1장.

5) 「經世遺表」, 권 1, 1~2장.

草本을 만든다는 것은 수정·윤택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식견이 얇고, 지체가 짧고, 경험이 적고, 전문이 고루하고, 사는 곳이 궁벽하고, 서적이 부족하다면, 비록 성인이 가려 뽑은 것일지라도 후대의 사람으로 하여금 수정·윤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수정·윤문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어찌 草本이 아니겠는가?⁶⁾

博大한襟懷와 철저한 ‘시대와 함께 변한다’는 정신을 체현하여, 모든 것이 사회 현실로부터 출발하였고, 또 모든 것이 사회 현실에 따랐던 것이다.

3. 명확한 법을 제정하여 간사한 관리들을 막을 것

宣祖 이래로 李朝의 국세는 날로 쇠퇴하여 위급해 갔다. 1592년에 왜구가 침입하여 전란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국고는 탕갈되었다. 이조 조정의 내부에서는 이른바 ‘東人’·‘西人’·‘南人’·‘北人’과 ‘老論’·‘少論’ 등으로 갈라져 싸우던 黨爭이 외환과 뒤섞여 일어나 백수십 년 동안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것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를 형성하여, 사회가 더욱 흔들려 불안하게 되었다. 쇠퇴해져 가는 국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조정에서는 官制를 바꾸었지만, 더욱 혼란하게 되어, 官府의 귀속이 분명하지 못하고 직책이 명확하지 못하고 인원수가 일정하지 않아 폐단이 잇달아 생겨났다. 탐관오리들이 기회를 타서 그 수단을 놀려 거리낌 없이 멋대로 날뛰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다산은 일찍이 「경세유표」의 많은 분량을 할당하여, 이 점에 대해서 분석하여 폭로하였다.

꼭 필요하지도 않으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원이 곳곳에 있었다. 한 예로 司諫院의 직책은 諫靜과 論駁을 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식견 있고 사심 없는 사람을 임명해야만 했다. 다산은 일찍이 사간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면 모두 융통성 없는 간깐한 사람들로서, ‘혹은 앞뒤 눈치보느라 감히 입을 열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을 연못 속으로 밀어넣고서 돌을 떨어뜨리는 것을 일로 삼거나’, 혹은 ‘임금의 뜻에 맞추어 변명할 것이나 생각하여 혐의나 회피하여 물러나 기다리면서 의리를 끌어와 임금의 부름도 어긴다’. 일괄하여 불

6) 「經世遺表」, 권 1, 3장.

적에 ‘능히 사흘 동안이나마 公事를 처리하는 사람도 드물다.’⁷⁾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政事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비록 재주와 덕행이 있을지라도 벼슬 자리에 들어가기 어렵다. 혹 벼슬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정사에 참여하여 듣기가 어렵다. 조정에서는 비록 정기적으로 과거를 실시하여 선발하기는 하지만, 이름은 인재를 발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재를 매몰하는 것이다.

武科에서 많이 뽑을 때는 혹 千名에 이르기도 하는데 조정에는 이들에게 줄 관직이 없다. 이에 선발되었으면서도 벼슬하지 못하고 흰 머리가 되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십중팔구고, 처음부터 선발되지 못한 사람이 백에 구십 칩십이니, 천하에 법도 없고 제도도 없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경우가 없다⁸⁾.

官制가 혼란하게 됨에 따라 초래된 나쁜 결과로, 한 쪽으로는 사람들이 일을 등한히 하여 그저 자리나 차지하고서 녹봉만 받아 먹게 되었고, 다른 쪽으로는 부정을 저지르는 풍조가 크게 일어나 백성들을 마음대로 괴롭혀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이다.

田稅는 조정 수입의 주요 원천이었지만, 각 郡縣에서는 은닉시키거나 漏落시키지 않는 곳이 없었다. 康津縣 같은 경우에는 原田 6,000結이 있었는데, 은닉시키거나 누락시킨 田地의 면적이 엄청나 2,000여결이나 되었다. 관청에서 징수하는 것은 실제로 사분의 삼에 불과하였고, 그 나머지 사분의 일은 고을 아전들의 개인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데도, 강진은 전국에서 누락시킨 田結이 가장 적은 군현에 속하였다. 海南의 田地는 비록 강진보다 적었지만, 누락시킨 전결의 數目은 도리어 강진보다 많았다. 羅州 같은 경우에는 누락시킨 전결의 수목이 原結의 수목보다도 더 많았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고을의 아전들은, 살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저지나, 신체 불구자·홀애비·홀어미·부모 없는 아이·자식없는 노인들을 항상 원결의 수목에 충당시키기도 하고, 또 부호를 잡아다 전결을 누락시켰다고 지목하여 사사로

7) 『經世遺表』, 권 1, 22장.

8) 『經世遺表』, 권 2, 6장.

이 돈이나 곡식을 징수하여 갔는데, 이를 ‘防結’이라고 하였다.

매년 늦겨울이나 초봄에 탐학한 아전들이 사사로이 거둔 곡식을 큰 배에 실어서 멀리 嶺南이나 京江으로 보내니, 관청에서 거두는 조세는 100석도 되지 않았다.上司를 속이고 사람들의 이목을 가리는 현실이 이러했다.

악질적인 아전이나 교활한 軍校를 민간에 푸는 것을 이름하여 ‘檢督’이라고 했다. 어떤 집에 세금 낼 것이 없으면, 그 이웃에서 거두기도 하고 그 마을에서 거두기도 하고 그 일쪽에게서 거두기도 하고 그 인척에게서 거두기도 하여, 방을 뒤흔거나 땅을 파기까지 한다. 머리를 매달거나 팔을 묶어 두고서 술을 떼어가거나 송아지나 돼지를 빼앗아 가니, 온 마을이 왁자지껄하고 울음소리가 하늘에까지 진동한다. 천지간의 和氣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처참하게 만든다. 이들 일행이 지나간 곳에는 열 집에 아홉 집은 비게 되고, 처마가 무너지고 벽이 망가지게 되고 창문은 기울어지지만, 검독들이 빼앗은 것은 또 일찍이 한 날도 관청으로 들어간 것은 없었다.⁹⁾

다산은 오래도록 민간에 있었으므로 鄉吏들의 일을 눈여겨 보았는데,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끝이 없었고, 정말 눈물을 흘리고 싶은 일이 여러 번 있었다.¹⁰⁾

지방행정을 부패하게 만들고 탐관오리들이 멋대로 날뛰게 만든 다른 한 가지 원인은, 조정에서 매관매작하는 것이었다. 다산은 邸吏를 예로 들어 분석하였다. 저리 중에는 京主人·營主人이라고 일컫는 小吏가 있는데, 이는 본래 供役에 종사하는 賤隸下卒로서 수입이 미미하였고 아무런 권세도 없었다. 후대에 조정의 정사가 막히고 탐학한 풍조가 사방에서 일어남에 그 供役의 값이 날로 증가하여 경주인·영주인이 문득 수입이 좋은 자리가 되었다. 드디어 조정의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이 공공연히 돈을 내어 이 직위를 사기도 하고, 守令이나 監司들은 기회를 잡아 뇌물을 주기도 하니, 갑자기 그 값이 백 배로 올라 경주인의 매매가격이 5,000냥에 이르렀고, 영주인은 10,000냥에 이르렀다. 이것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이러했다.

9) 「經世遺表」, 권 1, 15장.

10) 「經世遺表」, 권 2, 20장.

그 가격이 백 배로 되었으니, 그 이익이 백 배로 되었음을 알 수 있겠다. 그 이익이 백 배라면 백성을 수탈하는 물건도 또한 백 배라는 것을 가히 알 수 있겠다. 이에 京邸와 營邸는 사납고 교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었고, 재물과 이익이 이미 풍부하고 권력도 더욱 강해졌고 백성을 수탈하는 것도 더욱 깊어졌으니, 백성들의 큰 병은 이보다 더할 수가 없게 되었다.¹¹⁾

文臣・武將들이 邸吏를 사사로이 사서는 앉아서 백 배의 이익을 거두어 들고, 뇌물이 공공연히 횡행하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 되었다. 수령은 한 때의 뇌물을 탐내고 저리는 만세의 이익을 누리니, 국가와 백성은 빈털털이가 되고 상하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직면하여, 다산은 마음을 아파하고 끝치를 섞었다. 다만 그는 문제의 근원은, 간악한 아전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상하의 등급이 없고 귀천의 구별이 없고 염치의 도리를 잃고 탐악하고 무례한 것을 하는 것이 세상 풍조가 되었는데, 이는 法制의 허물이다”¹²⁾라고 했고, 또 “아전이 꼭 간악한 것이 아니고, 그를 간악하게 만드는 것은 법이다”¹³⁾라고 했다. 이 어지러운 법이, 탐악하고 사람을 속이는 풍조와 기회를 만들고 많은 불법의 무리를 만들어 냈다. 조정의 기강을 숙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官의 법을 분명히 정하여 최악의 근거지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산이 「經世遺表」를 지은 것은, 어지러운 법을 제거하여 바른 데로 돌이키려는 것이었다. 그가 정한 새로운 官法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관직의 정원을 정할 것

다산은, “사물에 정해진 수가 없는 것이 혼란의 근원이다”¹⁴⁾라고 생각하였다. 만약 官署나 官員의 정원에, 천연적으로 쇠를 녹여 부은 듯한 형상이 없이, 마음대로 增減・廢興한다면, 기강이 문란해지고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형세를 야기하여, 조금만 살피지 못해도 반드시 土崩瓦解의 국면이 될 것이다.¹⁵⁾

11) 「經世遺表」, 권 1, 21장.

12) 「經世遺表」, 권 2, 11장.

13) 「與猶堂全書」, 제 1집, 244페이지.

14) 「經世遺表」, 권 1, 1장.

15) 「經世遺表」, 권 1, 1장.

이리하여 다산은 「周禮」에 근거하여, 三百六十官의 원칙과 李朝가 藩國이라는 현실을 설정하여, 六官의 총수를 120으로 하고 每官의 下屬을 20으로 하여 바꿀 수 없는 법칙 한 조를 만들었다. 뒷날 만약 변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만 20개 屬官의 안에서 혹은 나누어 둘로 만들어 하나는 없애버리거나 혹은 합쳐 하나로 만들어 그 하나를 흡수할 수는 있지만, 그 큰 수는 가감할 수가 없다.¹⁶⁾ 이 하나의 원칙은, 관직이 줄줄이 늘어서거나 사람을 위해서 일을 만드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아주 필요한 것이었다.

2) 각 관서의 직책과 종속관계를 명확히 할 것

조정 관서를 모두 120개로 하여 六曹에 分屬하여 마치 그물에 버리가 있는 것처럼 조리가 있어 문란하지 않도록 하고, 그 직책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옛 제도 가운데서 무릇 이것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모두 조정한다. 예를 들면 宗親府·忠勳府·儀賓府·敦寧府·中樞府 등 五上司는 육조에 들어 있지 않았는데, 이들을 吏曹·兵曹에 분속시킨다. 다산은 이르기를, “법 만들기를 마땅히 이처럼 엄격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¹⁷⁾

3) 각종 관원의 품계를 규정할 것

다산은, 관직의 품계를 九品으로 정하여, 三品 이상을 大夫, 四品·五品을 上士, 六品·七品을 中士, 八品·九品을 下士라 하여, 관직과 품계 사이에 엄격한 대응관계가 있도록 하였고, 무릇 뒤섞인 것은 일률적으로 바로잡았다. 다산은 말하기를, “무릇 뒤섞어 만드는 것은 혼란의 근본이다. 王者가 법을 만들 때는 일률적으로 하여 변동하지 말아야 한다”¹⁸⁾라고 했다. 그리하여各司의 提調는 中大夫가 맡도록 일률적으로 정하였다.

4) 行政區域을 다시 劃定할 것

16) 『經世遺表』, 권 1. 1장.

17) 『經世遺表』, 권 1. 3장.

18) 『經世遺表』, 권 1. 4장.

극도로 혼란한 행정 구역의 區劃은 암흑적인 정치를 야기하는 중요 원인의 하나이다. 各道와 各郡의 구획을 자연적인 형세에 맞추어 하지 않고, 강제로 경계를 만들었다. 磨天嶺山脈이 咸鏡道の 중앙을 가로지르고, 蘆嶺山脈이 全羅道 중앙에 뻗어 있는 경우 등인데, 더욱 심한 경우도 있었다.

한 줄기 푸른 산이 분명히 이 縣 앞에 있는데도 물어 보면 수백리 밖 아주 먼 郡에 속해져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름으로는 郡縣에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매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宮房에 매어 주었고, 어떤 경우에는 軍門에 매어 주었고, 어떤 경우에는 土豪에게 갖다 바쳤고, 어떤 경우에는 관리와 결탁되어 있다. 鎭堡가 있는 것은 水營에 속해 있고, 別將이 있는 경우에는 京營에 속해져 있다.¹⁹⁾

이런 경우에는 관리상의 곤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관리들이 사사로이 이익을 꾀하여 폐단을 만들어낼 여지를 준다. 다산은 국토를 12省으로 다시 劃分하려고 했는데, '획분의 원칙은, 마땅히 명산대천으로 구역을 정하는 것'²⁰⁾과 '들을 구획하여 고을을 나눌 때는 마땅히 하늘이 만들어 준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²¹⁾이었다. 예를 들면, 원래의 함경도를 마천령을 경계로 하여, 서쪽은 玄菟省에 소속시키고 동쪽은 滿州省에 소속시키고, 원래의 전라도를 노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북쪽은 完南省에 소속시키고 남쪽은 武南省에 소속시킨다는 것이다.

5) 전문 官署를 만들어 田賦를 관리하게 할 것

“오늘날 국가의 일 가운데서 가장 급히 해야 할 일은 田政이다”²²⁾라고 다산은 말했는데, 당시 가장 문란한 것이 전정이었다. 다산은, 반드시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그 管理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그 첫째는 經田司를 설치하여 公田을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經田御史를 파견하여 微服으로 암행하게 하고, 관리를 보내어 전답을 측량하여 그 숨기고 빠뜨린 것을 찾아 내고 그 陳荒地를 조사해 내야 한다. 그런 다음에 私田을 사들여

19) 「經世遺表」, 권 2, 18, 19장.

20) 「經世遺表」, 권 3, 34장.

21) 「經世遺表」, 권 3, 38장.

22) 「經世遺表」권 1, 15장.

공전을 만들어서, 가능한 한 公田을 장악해야만 하고 아울러 공전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

두번째는 平賦司를 설치하여 田賦의 등급을 관장한다. 李朝에는 원래 田賦에 관한 법이 없었다. 그래서 관청의 비용이 부족하면, 임의로 명목을 만들어 田稅에 포함시켜 거두었는데, 稅額이 높아져 십분의 칠 팔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백성들이 견뎌내지를 못했다. 이제 「周禮」 및 漢·唐·宋·明의 제도를 살펴 九賦의 법을 만들어 평부사에서 통일적으로 관장하도록 하여 마음대로 증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6) 度量衡을 통일할 것

이조시대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량형이 없어, “한 城 안에서는 저자마다 달랐고, 한 고을 안에서는 마을마다 다르고, 한 마을 안에서는 집집마다 달랐다. 그래서 거두어 들이는 것과 내주는 것이 같지 않았다.”²³⁾ 이는 여러 방면으로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를 이용해서 아전들이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문제였다.

이런 까닭에 「經世遺表」에서는 전문적으로 量衡司를 세우려고 하였다. “무릇 六部 十二省의 도량형 가운데서 털끝 만큼이라도 차이가 있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최고로 무거운 형벌을 이용하여 그 사람을 목베고 그 재물을 몰수하고 그 관리를 처벌한다”²⁴⁾

도량형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量衡司에서 해마다 저울과 자 1,200개를 만들어 十二省에 나누어 주면, 십이성에서는 해마다 저울과 자 만 개를 만들어 양형사에 바친다. 또 해마다 저울과 자 수만 개를 만들어 민간에 나누어 주면 백성들은 그 값을 바친다. 양형사에서는 12만 개를 육부에 나누어 주어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 관청과 민간 사이의 표준은 서로 맞추어 바로 잡도록 한다.”²⁵⁾ 말과 斛의 제도도 저울처럼 하도록 한다.

7) 관리들을 엄격하게 감독할 것

23) 「經世遺表」, 권 2, 22장.

24) 「經世遺表」, 권 2, 22장.

25) 「經世遺表」, 권 2, 22장.

모든 관리들은 모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아울러 감독을 받도록 한다. 「經世遺表」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外職은 부임한 지 반년, 京官은 3개월이 되면, 반드시 유관 部署의 考課를 받도록 한다. 옛날 제도에, 무릇 京官으로 三品 이상은 모두 考課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고, 외직으로 觀察使·節度使 등도 이와 같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貪虐하고 형편없이 荒淫해도 누구도 단속하지 못했다.²⁶⁾

다산은, “三公이 비록 존귀하다 해도 考課를 하지 않을 수 없다”²⁷⁾라고 했다. 그러니 그 밖의 관직은 말할 것도 없다.三公과 三孤의 고과는 中樞府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六曹의 大夫와 三營門의 大將과 漢城判尹 등의 고과는 議政府에서 주관하도록 하였다. 육조의 參判 이하 官員의 고과는 육조의 判書와 그 中·下大夫가 연합하여 주관하도록 하였다.

“考課의 妙點은 그 성적을 아뢰는 데 있다”²⁸⁾라고 다산은 말했다. 「經世遺表」에서, 각급 官員의 성적을 아뢰는 글의 격식을 나누어 상세히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吏曹判書가 아뢰는 글에는 반드시 27개의 조항이 있어야 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某月某日에 某人을 추천하여 某職에 除授하였는데 그 사람은 능히 그 직책을 잘 수행합니다.
- 某月某日에 某人을 某職에서 파면할 것을 아뢰입니다. 某月某日에 상소하여 政事를 考課하여 임명하는 법을 아뢰나니, 청컨대 某法典을 수정하여 분명히 하시옵소서.
- 某月某日에 內官 가운데서 멋대로 날뛰는 자를 잡았으니, 某官을 파직하여 刑曹로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기를 아뢰나이다.
- 某月某日에 司饗院에 奸橫한 자가 있는 것을 적발했는데, 그 죄에 따라 법을 시행할 것을 아뢰나이다.
- 某月某日 山林의 遺逸之士를 구하여 某人을 얻었기에 추천하나이다.
- 某月某日에 좌우의 간사한 사람을 적발하였으니, 어떤 죄에 따라 그 법을 시행할 것을 아뢰나이다.

26) 「經世遺表」, 권 4, 11장.

27) 「經世遺表」, 권 4, 11장.

28) 「經世遺表」, 권 4, 12장.

- 某月某日에 劄子를 올려 考課의 법을 이렇게 더욱 잘 만들 것을 아뢰나이다.

아뢰는 글의 격식과 내용은, 관원들에 대하여 아주 강한 감독의 기능이 구체적이고도 자세하여 도망갈 수 없게끔 하였다.

정상적인 길을 벗어나는 아전들에게 수시로 조치를 가하기 위하여, 『經世遺表』에서는 掌胥院이라는 한 官署를 설치하여, 十二省의 鄉吏들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그 定員을 정하고 그 條例를 반포하고 그 한계를 엄격히 해 두 고서, 만약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장서원에서 적발하여 탄핵한다. 그러면 거의 불꽃을 끄고 그 물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간사한 아전들을 막기 위해서 다산이 제정한 법률은 방대하여 위에 기술한 몇 조항에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만 이 몇 조항만으로도 그 법이 엄밀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다산이 만든 이런 법을 시행한다면, 어찌 아전들이 간악한 짓을 그만두고 착한 길로 가지 않겠는가?

4. 富國強兵의 源泉을 열고 그 흐름을 조절해야 한다

다산의 생시에, 이미 이조는 아주 오랫동안 빈곤과 약소함이 악순환하여 나라의 운명은 흔들려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서 부국강병이 드디어 급선무가 되어 있었다. 다산은 『經世遺表』에서 훌륭한 대책을 아주 많이 제시하였다. 여기서 그 몇 가지를 例舉하겠다.

1) 戰勢를 갖추는 데 치중할 것

鴨綠江은 朝鮮 북쪽의 천연 요새로 그 형세는 대체로 ‘人’자 모양을 하고 있다. 閭延을 끼이는 중간지점으로 하여 동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서쪽 부분은 서남에서 동북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동쪽 부분은 서북에서 동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강의 남쪽 지역에는, 또 장수(長津江)와 독강(禿魯江)이 있는데, 이 세 강의 사이에는 본래 茂昌·閭延·虞芮·慈城 등 四郡이 있었다. 서쪽으로는 강을 따라 渭原 등 일곱 개의 고을이 있었고, 동쪽으로는 강을 따라 甲山 등 몇 개의 고을이 있었다. 그 뒤 국가에서 폐지시킨에 따라, 드디어 亂民들이 제멋대로

사는 곳이 되었다.

女眞族들도 강을 건너 와서 산림 속에 숨어 살면서, 날마다 金·銀·銅·鐵을 캐어 두드리고 녹여 만들어 商品으로 삼았다. 어린이 만한 산삼과 담비털가죽으로 스스로 부유하게 되고, 활과 창 맹렬한 불 등으로 스스로 호위하고 지내면서, 조만간 반란을 일으킬 곳이 되어 있었다.²⁹⁾

조정에서는 이 곳을 다른 나라 땅처럼 보았다. 그래서 장수·독수 일대에는 근 20개의 堡를 설치하여 변경의 방어지점으로 삼았지만, 압록강 연안의 葛坡에서 滿浦에 이르는 600여 리의 땅에는 방어지점도 없이 텅 비워둔 채 한 명의 군사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리하여 압록강 연안의 일곱개 고을이 서로 연결되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兵家에서 크게 꺼리는 바이다.³⁰⁾

다산은 이르기를, “率然이란 뱀은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이르고 그 꼬리를 치면 그 머리가 이르고 그 가운데를 치면 머리와 꼬리가 다 이른다. 이는 兵家의 大勢이다. 이제 率然이란 뱀의 머리는 甲山에 있고 꼬리는 渭原에 닿아 있는데, 그 허리와 배는 이미 다 썩어 버렸으니, 머리와 꼬리로서 구제할 수 있겠는가?”³¹⁾라고 했다.

이 때문에 다산은 이런 대안을 제출하였다. 장수·독수 연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堡를 전부 철수시켜 압록강 연안으로 옮겨서, 葛坡·滿浦 사이의 텅 빈 곳을 막는다면, 힘을 더 들이지 않고 재물을 더 쓰지도 않고서도 압록강의 천연적인 요새가 완전하게 될 것이다.³²⁾ 다산의 이런 건의는 자못 전략적인 안목을 갖추었는데, 국경 방비를 더욱 강화하여 오랜 시기동안 정치가 잘 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다. 예시할 만한 유사한 예가 적지 않지만, 전체 논문의 분량에 제한이 있어 다시 번거롭게 들지 않는다.

2) 武備를 강화할 것

강한 군대는 수레·배·말 같은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도, 나라 안에는 전쟁에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면 배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29) 『經世遺表』, 권 3, 37장.

30) 『經世遺表』, 권 3, 37장.

31) 『經世遺表』, 권 3, 37장.

32) 『經世遺表』, 권 3, 37장.

는 따를 만한 제도가 없었다. 자를 쓰지 않고 눈짐작을 써서 하고, 재목도 또한 고르지 않았다. 그래서 재목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져, 혹은 바닥은 짧은데 뱃전은 길고, 혹은 바닥은 좁은데 바깥에 대는 나무는 넓고, 혹은 선체는 작은데 키는 크고, 혹은 선체는 큰데 돛대는 짧다.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고, 배 부분과 등 부분이 걸핏하면 서로 장애가 된다. 혹은 키를 들었는데도 뱃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혹은 돛을 펼쳤는데도 뱃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³³⁾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서 造船 기술이 이다지도 낙후되었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경탄하게 한다. 만약 적선이 쳐들어 온다면 어떻게 맞아 싸우겠는가?

배도 오히려 이리하거늘 수레는 더욱 형편 없었다. 나라 안에는 옛부터 수레가 없었다. 임진왜란 때 군대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군량과 군수품 등은 단지 백성들이 어깨에 메거나 등에 지고서 운송하였다.

‘나라의 급한 政事로는 말보다 더한 것이 없다’. 군대를 두고 이야기하자면 말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라 안의 백성들은 고루한 습속에 구애를 받아, 북쪽은 일찍 추워지고 남쪽은 지대가 낮고 습하기 때문에 모두 말 키우는데 적합하지 못하다고 여겼다. 이런 까닭에 큰 고을에서도 말 열 필을 찾아 낼 수 없었고, 눈에 뜨이는 말은 모두 군대의 말로는 쓸 수 없는 나쁜 종자의 작은 말이었다. 그 원인은, ‘나라의 풍속이 말을 교미시키는 것을 엄금하기 때문에 숫말은 종신토록 정조를 지키고 암말은 혹시 한 번 짝 새끼를 낳는다. 그런데다가 뜨거운 죽과 따뜻한 덩석을 입히는데 이 때문에 온갖 병이 생겨난다. 그러나 말을 치료하는 방법은 발을 파내어 피를 내는 방법 한 가지 뿐이어서, 피가 흘러 내를 이루고 말이 서 있으면 후들후들 떠난다.’³⁴⁾

성을 쌓는 방법도 아주 낙후되어 있다. 城牆이란 것이 모두 돌을 깎아 벼랑에 의지하여 쌓았는데, 한 겹질 안은 모두 부스러지는 흙이다. 장정 한 명이 갈고랑이로 걸어당기기만 하면 곧 바로 무너져 버린다.³⁵⁾ 이럴 뿐만 아니라 시골 사람들은 몽매하게 풍수설을 믿어, 이른바 ‘靑龍의 형세가 어떠니 물길이 어떠니’ 하는 것으로써 성 쌓을 곳을 선택한다. 국경지방의 즉각 변란에 대처해야 하는 곳마저도 예외가 아니었다.

33) 「經世遺表」, 권 2, 36장.

34) 「經世遺表」, 권 2, 4장.

35) 「經世遺表」, 권 2, 30장.

위에 언급한 각종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산은 일일이 대책을 제시하였다. 造船技術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먼저 典艦司를 설치하여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그런 뒤에 관계 관원과 匠人을 파견하여, 해안에 표류하여 온 중국·일본 및 琉球·루손도 등의 배를 주의하여 관찰하여, 그들 배의 한 부분의 치수, 재료 및 기름과 횃가루를 솜과 섞어 배의 틈을 막는 방법, 양쪽 뱃전에 덧대는 나무판자의 제도 등을 자세히 측량해서 기록하여 그 짜임새와 기능을 물어서, 우리가 본떠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³⁶⁾ 그런 뒤에 다시 이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만든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다.

신속하게 수레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여 민간에 보급하기 위해서, 다산은 典軌司를 설치하여, 이 관서의 기술자가 직접 중국의 수레 양식을 모방하여 제작할 것을 주장했다. “무릇 공사간에 필요한 수레를 모두 典軌司에서 만들어 그 제작비를 계산하여 그 정가를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값을 내고 수레를 받아가도록 한다.”³⁷⁾

馬政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다산은 牧圉司를 설치하여 전국 목장의 일을 총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각도의 부자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 섬이나 산 속의 농장이 있어 말을 칠 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목장을 설치하여 말을 치도록 하고, 관청에서 種馬를 주어 번식시키도록 한다. 만약 기른 말이 천 필에 이른 사람에게 그 가운데서 준마 열 필만 골라서 목어사에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유롭게 팔아 먹을 수 있게 하고, 그 사람에게 바로 목어사의 관직을 주어 관직 옮기기를 법과 같이 한다.”³⁸⁾ 백성들이 말을 기르려는 적극성을 활용하려 한 다산의 이런 계획은 탁월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것도 없다.

성을 쌓는 방법에 이르러서는, 修城司를 설치하여 그들에게 명하여 중국에 가서 배우도록 명하여, 그들이 쌓은 성이 견고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하고, 성 안의 防火 및 각종 방비 시설 등은, 일괄적으로 설계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³⁹⁾

다산이 武備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한 조처는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그 특징적인 것은 모두 현실에 들어 맞는 실행 가능한 것이었고, 효과가 빠른 것이었다.

36) 『經世遺表』, 권 2, 36장.

37) 『經世遺表』, 권 2, 34장.

38) 『經世遺表』, 권 2, 4장.

39) 『經世遺表』, 권 2, 30장.

3) 근원을 열어 흐름을 조절할 것

국고가 고갈되고 세입이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難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산은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田賦 징수상의 각종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으뜸되는 財源을 각급 관리들이 횡령하는 일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관리들에 대한 각종 규제 이외에도, 따로 版籍司 등을 세워서 戶口와 田結을 조사하여 稅率을 확정하여, 토지와 인구에 대한 통제가 최대한 국가의 수중에 있도록 하고, 이전에 누락되었던 賦稅를 전량 국고에 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도가 소루하여 오랫동안 징수하지 못했던 농업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도 마땅히 빠른 시일내에 전담 기구를 만들거나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보강해야만 한다. 장사들이 각 관문을 출입할 경우 관문을 담당하는 관리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방법이 없다. 왕래하는 사람들은 무인지경을 출입하는 것처럼 하니, 천하의 관세를 다 잃고 마는 것이다. 다산은 이르기를, “慕華嶺은 서쪽 지방으로 통하는 큰 관문이고, 忘憂嶺은 동쪽 지방으로 통하는 큰 관문이고, 水踰嶺은 북쪽 지방으로 통하는 큰 관문이다. 이런 곳마다 모두 관문을 담당하는 관원을 두어 그 禁法을 관장하게 하여, 무릇 큰 財貨가 출입할 때는 천분의 일의 세금을 거두도록 한다”⁴⁰⁾라고 했다. 이 일은 津關司에서 주관하도록 한다.

나라 안에는 산과 삼림 광산 등의 자원이 매우 풍부하지만, 토호나 관리들이 그 이익을 오로지 차지하고 국가는 전혀 모르고 있다. 다산은, “이제 十二省의 이름난 산 큰 산들을 모두 대장에다 등기하여, 산 주위 면적을 명확히 하고, 그 토질에 알맞는 것을 구별하여 그 재배를 관장하고 그 금지사항을 살펴서 그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한다”⁴¹⁾라고 말했다. 산림 속의 소나무·노송나무·잣나무·흰느릅나무·느릅나무·단풍나무·비자나무 등 각종 우량 목재는, 마땅히 벌채를 엄금하고 그 세금을 거두는 것이 마땅하다.⁴²⁾

수풀 속의 새나 짐승 등의 가죽 털 이빨 뿔 등은 兵器등을 만드는 데 아주 긴요히 쓰이는 것인데도, 전에는 관청에서 거두어 들이지 않았고 백성들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 썩게 내버려두었다. 또 담비나 인삼 등 산림의 특산물들, 외국

40) 「經世遺表」, 권 2, 24장.

41) 「經世遺表」, 권 2, 25장.

42) 「經世遺表」, 권 2, 26장.

사람들은 보배처럼 여기는데도, 토호들이 마음대로 그 이익을 독차지하도록 내버려두었다. 다산은, 이러한 임산물류의 관리를 山虞寺나 林衡寺에 귀속시키도록 했다.

광산물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종류가 두루 갖추어져 있었지만, 민간에서 사사로이 멋대로 채굴하는 현상이 아주 심했다. 다산은, 司鑛署를 설치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릇 금·은·동 광산의 채굴은 모두 관청에서 비용을 내어 채굴해야 한다. 혹 사사로이 채굴하는 사람은 몰래 돈을 주조하는 것과 같은 죄로 다스려야 한다. 오직 철광만은 백성들이 사사로이 채굴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⁴³⁾ 이렇게 하게 되면 광산이 진정으로 국가의 재산이 될 수 있다.

국가 관서의 경비는, 재정 지출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한다. 만약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면, 재원의 지출이 더욱 많아져 반드시 거의 다 유실되고 말 것이다. 다산은, 한편으로는 관서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 관서에서 각 관서의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재원을 개발하여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여 국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典醫監이나 惠民署에서는 오랫동안 경비가 부족하여 계속 지탱해 나갈 수가 없었다. 다산은 이렇게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모든 藥市의 세금을 그 관서 아래에다 귀속시키고, 城內 六部の 藥舖를 세 등급으로 나누어, 上等은 매년 세 폐미, 中等은 두 폐미, 下等은 한 폐미의 돈을 징수하도록 한다. 동쪽 三部는 전의감에 귀속시키고, 서쪽 三部는 혜민서에 귀속시켜, 그 경비에 충당하고 관리와 노비들의 급료를 주도록 한다.⁴⁴⁾ 이렇게 하면 두 醫署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기 관서의 경비를 스스로 조달할 수가 있게 된다.

또 凌人署 같은 경우 水庫를 관장하는데, 다산은 이렇게 제안했다. 대궐 안의 샘이 맑고 땅의 기운이 그윽히 엉긴 곳에다 얼음 저장하는 곳을 파서, 水庫의 관리나 노비들에게 시켜 내다 팔게 하면 저절로 넉넉해져, 몇 년 지나지 않아 水庫는 풍족한 관서가 되어, 국가는 해마다 수만 폐미의 경비를 절감하게 될 것이니, 준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⁴⁵⁾

典艦司의 경우, 관장하고 있는 배를 그냥 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씩도록

43) 『經世遺表』, 권 1, 18장.

44) 『經世遺表』, 권 1, 7장.

45) 『經世遺表』, 권 1, 5장.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충분히 이용하기 위해서 다산은 이렇게 제안하였다. 모든 水營의 兵船制度를 九等級으로 나누어 사유의 배와 같이 輸送이나 漕運을 하거나 곡식을 팔 수 있도록 하여 연해의 여러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어 다니면서 장사하도록 한다. 무릇 船主가 배를 사용하는 법은, 그 남는 이익을 계산하여 선주가 십분의 이를 거두어 간다. 공공기관의 배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모름지기 사유의 배보다 싸게 할 것을 백성들이 바란다. 그래도 그 나누어 가지는 바는 또한 적지 않다. 일년 동안 거둔 돈으로는 배의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고, 삼년 동안 거둔 돈으로는 새로 배를 만드는 경비를 충당할 수가 있으니, 또한 좋지 않은가?⁴⁶⁾ 이러한 예는 이루 다 들 수가 없다.

5. 맺음말

다산은 마흔 살 되던 해에 천주교사건에 혐의를 덮어쓰고 유배되어, 長鬚·康津 등지에 추방되어 18년의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다. 다산이 「經世遺表」를 지을 당시의 나이는 쉰 여섯 살이었는데, 그 때까지도 다시 세상에 나올 희망이 없는 귀양살이 중이었다. 그런데도 다산은 곤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즐거운 마음을 갖고서, 국가의 앞 길에 대한 우려와 애타는 생각과 기대 등을 모두 「經世遺表」 속에 쏟아부었다.

다산은, 祖宗의 법으로 하여금 시대와 함께 변하도록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운이 흔들리는 危難의 시기에 그가 과감하게 새로운 사회의 모순과 도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산은, 혼란한 법을 바로잡는 일을 亂世를 다스리는 전제로 삼아, 부패한 官僚體系의 혁파를 통하여, 효율적인 하나의 職官體系를 건립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개혁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였다.

西學東漸의 조류에 직면하여 다산은 「周禮」로써 나라를 다스릴 근본으로 삼았는데, 이는 東方文化 전통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教條의이지 않고, 「周禮」의 治國原則과 朝鮮의 국정과 시세를 서로 융합하고 발전시켜서, 독창적인 治國思想體系를 형성하였다. 다산이 時弊를 구제하고 부국강병하기 위해서 제시한 각종의 대책은, 사회에 대한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관찰과 사고에서 나

46) 「經世遺表」, 권 2, 37장.

온 것이었으므로, 시폐에 절실하게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오늘날 改革開放 과정 중에 있는 中國에 대하여 본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다.

「經世遺表」는, 다산이 이조사회에 공헌하려 한 治國綱領이었지만, 통치집단에게 採納되지 않았다. 다만 한 편의 불후의 政治古典의 지위는 차지했지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 학문의 博大·精深하기가 寶庫 같은데, 지금 사람들의 그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만약 이러한 조그만 글이 능히 中國 學界의 다산에 대한 주의를 진작시킬 수 있다면, 필자의 마음은 기쁘고 흐뭇하겠다.

<翻譯：許捲洙(慶尙大學校 漢文學科)>